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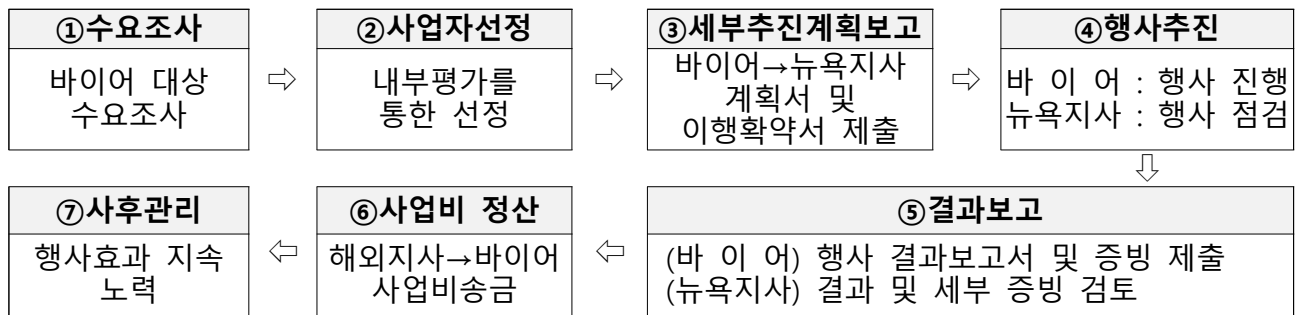
- 지원내용 : 자사 제품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의 80%
  - 인플루언서 섭외비, 콘텐츠 제작비, 온라인 홍보비, 광고비 등
  - 홍보 품목의 마케팅 방향에 맞는 인플루언서 및 홍보 플랫폼 선정, 홍보 콘텐츠 제작방향 등은 업체 자율에 맡김
- \*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현지 법인의 경우 정산 승인액의 50%만 지원

- 지원조건
  - (사업의무액) 지원 금액의 200%에 해당하는 판매(수입) 실적 제출
  - \* (판매실적) 행사 기간, (수입실적) 행사 전 30일+운송기간 30일+행사기간+행사 후 30일
  - 인플루언서와 온라인 판매플랫폼 최소 1개 이상 연계하여 제품 판매효과 창출
  - 행사기간은 콘텐츠 게시, 부스팅 기간, 이벤트 쿠폰 유효기간, 이벤트 일정 등으로 계산되며 최소 1개월 이상 추진해야함

- 정산제출서류
  - 사업 결과보고서(제작 콘텐츠 및 조회수, 웹사이트 방문수 등 성과, 발생 매출액, 홍보사진 캡처본 등 포함)
  - 홍보 제품의 수입 및 온라인 판매플랫폼의 매출 실적 서류
  - 인플루언서 계약서, 온라인판매채널 발행 인보이스, 지출증빙 등

□ 사업자 선정 및 절차

- 사업자 선정
  - 평가항목 : 홍보품목, 인플루언서, 행사매장 등의 적정성, 인지도 등



※ 붙임 1 : 신유통채널 발굴을 위한 수출유망상품 온라인마케팅 지원 정산기준  
 붙임 2~4 : 사업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결과보고서 등 양식